

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

의안 번호	5-137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9. .
제 출 자 : 김정자 의원 외 5인

□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이 2007. 5. 11. 전부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근거 조문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“지방자치법 제5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”로 함.(안 제1조)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”를 “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5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 제54조</u> 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동두천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 ----- ----- -----

《관계법령 발췌서》

☐ 「지방자치법」

제62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